

#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4 - 11호

##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창원시 의회 의장

### 1. 자치법규명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정이유

창원시의 역량 있는 아동문학 작가 및 작품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창원아동문학상의 운영과 아동문학도시인 창원시를 널리 알리는 세계아동문학축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 변경: 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나. 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 운영 조례의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 다. 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1조2)
- 라.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함(안 제1조3)
- 마. 창원아동문학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2조~제8조)
- 바. 창원아동문학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9조)
- 사. 창원 세계아동문학축전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 아. 창원아동문학 활성화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4,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keb2024@korea.kr), 직접 방문 등

#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7
----------	-----

발의연월일 : 2024. 1. 10.

발 의 의 원 : 김혜란·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김경희  
김영록·김우진·박강우·서영권·성보빈·손태화  
이원주·정길상·한은정 의원(15명)

## 1. 제안이유

창원시의 역량 있는 아동문학 작가 및 작품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창원아동문학상의 운영과 아동문학도시인 창원시를 널리 알리는 세계아동문학축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 변경: 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 운영 조례의 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다. 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1조2)

라.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함(안 제1조3)

마. 창원아동문학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2조~제8조)

바. 창원아동문학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9조)

사. 창원 세계아동문학축전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아. 창원아동문학 활성화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현행 조례

##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를 “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아동문학의 수도”를 “고향의 봄으로 대표되는 아동문학의 수도”로,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시상하여 아동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원 아동문학상 운영에”를 “아동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로, “규정함”을 “정함으로써 아동문학의 세계화와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아동문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조의3(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목표와 운영 방향
2. 창원아동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원 세계아동문학축전(이하 “축전”이라 한다) 개최 방향 및 행사 개요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제1항 중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아동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을 “시장은 문학상 및 축전”으로, “창원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를 “창원아동문학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위촉”을 “추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창원 세계아동문학축전”을 “축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학상”을 “문학상 및 축전”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창원아동문학상업무 소관”을 “문학상 및 축전 업무 담당”으로, “문학 부문”을 “문학 또는 축전 부문”으로 한다.

제8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연도로 한다”를 “해당연도 심사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축전의 개최) ① 세계 속의 창원 아동문학 표출과 한국 아동문학 위상 제고를 위하여 축전을 개최한다.

② 축전은 2026년부터 3년마다 개최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창원시의 아동문학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원아동문학 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창원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창원아동문학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아동문학의 수도 창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시상하여 아동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원아동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고향의 봄으로 대표되는 아동문학의 수도 --</u>  <u>- 아동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u>          -----          ----- <u>정함으로써 아동문학의 세계화와 발전에 이바지함-----.</u></p> <p><u>제1조의2(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아동문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u></p> <p><u>제1조의3(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u>  <u>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목표와 운영 방향</u></p>





동문학상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 ① 문학상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은 예선심사위원과 본선심사위원을 다르게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신 설>

및 축전 업무 담당 -----  
----- 문학 또는 축전 부  
문-----

제8조(수당 등) -----  
-----  
--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9조(심사위원) ① -----  
-----  
- 시장-----.

② -----  
-----  
--- 해당연도 심사에 한정한다.

제12조(축전의 개최) ① 세계 속의 창원 아동문학 표출과 한국 아동문학 위상 제고를 위하여 축전을 개최한다.

② 축전은 2026년부터 3년마다 개최한다.

<신 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창원  
시의 아동문학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문학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문학의 수도 창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시상하여 아동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원아동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아동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학상 운영 및 시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상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창원 세계아동문학축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창원아동문학상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위원)** ① 문학상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은 예선심사위원과 본선심사위원을 다르게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 제10조(수상자 선정 및 시상)** ① 문학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는 예선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 심사위원이 선정한다.  
 ② 문학상 시상부문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상장)와 시상금을 지급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11조(수상자 요건)** ① 수상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동문학 작품을 출간한 작가  
 2.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학인  
 ②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같은 작품으로 다른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2. 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수상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